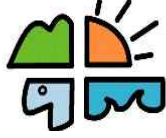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171호 2018년 10월 31일(수)

조 례

○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8년 월 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638호

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30억원”을 “50억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2018년 11월 12일”을 “2023년 11월 12일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 이유

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(31억원)되었으나 금융권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현 기금운용으로는 기존 장학금 지원규모를 충당하기 어렵기에 기금 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애향장학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